

## 디지털시대 지식재산권정책의 제도적 측면분석\*

- 미국의 경험의 바탕으로 -

### A Study on Institutional Aspects of Korea's Copyright Policy through USA's Experience in the Digital Age

이 기 식 (동해대학교 지방자치행정학과)

본 연구는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권정책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디지털시대를 반영하여 전반적인 지식재산권정책을 손질한 유일한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의 벤치마킹을 통해 분석변수를 선정·분석하였다. 분석범위는 저작권정책에 국한하여, 미국의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99)과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of 1998)을 근간으로 17개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저작권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저작권정책은 디지털시대라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정책의 목표인 정보생산자와 정보분배자 그리고 정보사용자의 이익균형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말미에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주제어: 지식재산권, 저작권, IT, 제도, 디지털시대

## I. 서론

모든 정책은 역사적·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며, 하나의 사회적 환경하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그 사회적 현실의 변화앞에서는 더 이상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른 환경변화속에서 기존의 제반정책들이 새롭게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저작권정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른 소위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전반적인 손질을 가할 필요성이 생겼다(Harris, 2000; Vaidhyathan, 2001). 이것이 본 논문의 주요한 문제의식이며 출발점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즉, 한가지는 저작권정책과 관련한 환경이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정보의 생산과 흐름을 다루는 저작권정책은 정보사용자와 정보생산자에게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정보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편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생산자<sup>1)</sup>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0-041-C00127).

1) 정보를 만드는 사람의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정보창조자, 정보생산자, 정보창출자

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많은 비용과 노력의 결과로 생산된 정보산물(products)은 정보사용자에 의해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고품질로 복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른 한가지는 국내 관련연구가 미진하였다는 것이다.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인터넷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sup>2)</sup>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을 중심으로 작업반(The 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구성하였으며, 관련 연구의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3)</sup>. 디지털시대를 반영하여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변용(變容)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행본, 정기간행물 및 석·박사학위논문들을 포함하여 연구건수는 총 1,096건에 달한다<sup>4)</sup>. 그런데 연구건수만을 보면 연구가 많은 듯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법학적 측면에서 논의되어, 전체연구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전체연구의 대략 4.1%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 관점의 연구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일반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최근에 연구된 논문으로는 배대현(2000), 이상정(1999), 윤선희(1998), 고충곤(1999), 송근장 외(1998), 홍성결(1997), 우지숙(1998), 정찬모(1999), 박문석(1998)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법학적·국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많았고, 정책적 측면에서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홍성결(1997)의 논문 등이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접목을 시도한 정도이다<sup>5)</sup>.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생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2)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사용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로 많이 표현되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은 '지적'이라는 용어는 다소 애매하며, 또한 새로이 등장한 신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까지도 디지털기술의 변화, 인터넷환경으로의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총체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최근 특허청 등을 중심으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특허청, 2000).
- 3) 예컨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살펴보면 1991년에는 CSTB (Computer Science and Telecommunication Board)에서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 Software (1991)』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994년도에는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Participants in Networked Communities』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1995년 9월에는 관련 태스크포스(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에서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1995』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더욱 높아져 1998년도에 U.S. Copyright Office에서 『Project Looking Forward: Sketching the Future of Copyright in a Networked World(May, 1998)』란 보고서를 내놓았으며, 1999년에는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A Question of Balance: Private Rights and the Public Interests in Scientific and Technical Databases』를 내놓았다. 그리고 2000년에는 『The Digital Dilemma: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Age(2000)』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미국은 저작권보호협약인 베른협약(1886년)에 1988년 가입한 이후, 저작권보호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 4) <표1> 국내 저작권연구실태(1945-현재)\* 비율(정책/총건수)

유형 연구결과	총연구 건수	연구내용의 분류									비율 (%)
		국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법학적 측면	정책적 측면	S/W 측면	뉴 미디어	언론 출판	저작권 일반	기타	
단행본	85	5	1	38	2	9	13	12	2	3	2.3
정기간행물	841	184	41	204	11	68	106	85	79	63	1.3
석·박사논문	170	26	23	66	1	7	9	17	2	19	0.5
합 계	1,096	215	65	308	14	84	128	114	83	85	4.1

\*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체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음.

전자국회도서관에서 1945년 이후 현재까지 '저작권'을 주제로 조사하였음.

\*\*국회자료에는 총 1,730건으로 되어 있으나, 상당부분 허수로 나타났음(자료: 국회도서관, 2002).

- 5) 본 논문에서 정책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을 구분하여 문제제기했지만 분석변수의 도출 및 분석내용이 법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률적 관점과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논거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정책적 차원에서 저작권정책을 파악하고자 하며, 특히 디지털 시대라는 환경적 요소가 한국 저작권정책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작권정책이 디지털시대라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본래의 목적인 저작권자(정보생산자)와 사용자(정보소비자)사이의 권익이 보장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개념 및 환경변화

저작권이라는 개념자체는 19세기 중엽에 이미 확립되어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저작권법제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확산발전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작권정책은 정보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sup>6)</sup>(Shapiro & Varian, 1999; Vaidhyathan,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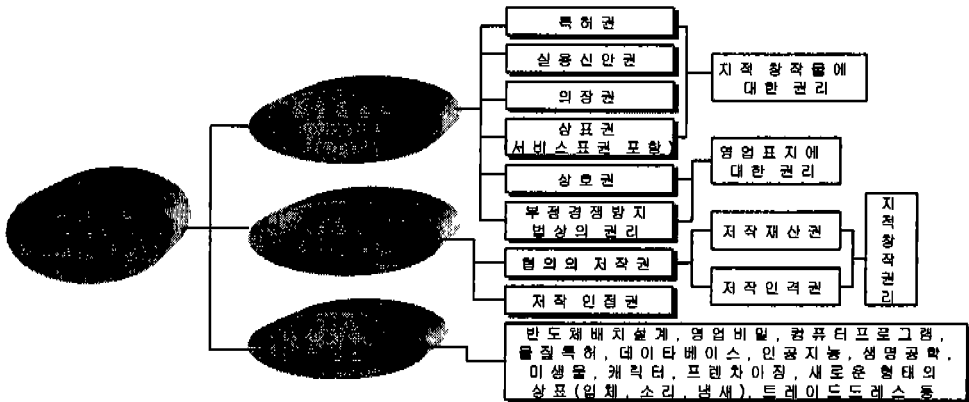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된다. 산업재산권은 신기술, 산업적 디자인, 상표 등 산업활동의 영역에 관한 권리이며, 저작권은 학술, 문학, 예술적 창작물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지식기술의 등장과 함께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칩, 생명공학, 변종동식물 등 '신지식재산권'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1〉참조)<sup>7)</sup>.

저작권(copyright)의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지만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저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저작권법에 명시된 권한(복제, 실

정책이라는 것은 법률(시행령, 시행규칙포함)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정책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본문에서 법학적 관점으로 파악한 것은 관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거나, 민사상구제, 민사책임 및 손해배상 등 전적으로 법학적 측면에서 논의한 것을 지칭한 것이다.

6) 저작권법에서는 복제(copy)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가령 인터넷상에서 무엇을 복제(copy)라고 봐야 할 것인지가 애매하다. 그리고 저작권의 개념도 산업재산권(특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및 신지식재산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디지털환경에 신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념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미국 프로농구선수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슛 동작"을 특허 신청하였다는 신문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슛 동작"이 특허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재산권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자본, 노동, 자원이외에 독특한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의 정보나 기술을 포함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7) <그림1> 지식재산권의 체계



연, 공연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sup>8)</sup>.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줌으로서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의 결과로 정보환경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사회발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것의 논리적 근거는 자연권적 이론과 산업동기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권적 이론에 의하면 일반재산권의 기초가 되는 노동이론에 입각하여 노동에 의해 창조된 것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는 정신적인 산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산업동기이론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활동을 장려·유인하여 정보환경을 풍부히 하고, 결국은 사회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시각이다. 최근에는 산업동기이론적 시각에서 저작권제도를 보는 경향이 많다.

저작권정책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즉 ■a) 복제금지: 복제라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매체에 고착되어 있음을 가정하며,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서는 복제를 금한다. ■b) 관념의 표현보호: 저작권법은 단순히 관념을 보호하지는 않으며, 표현된 관념을 보호한다. ■c)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품보호: 저작권은 단순한 관념의 표현이 아니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보호한다. 물론 여기에는 편찬물도 포함된다. ■d) 정당한 사용인정: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사용자들의 정당한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이다. 특히 미국 저작권법은 학술과 실용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자의 저술과 발명가의 발명에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이념아래 제정되었는데, 중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저작권의 객체: 유형의 고정된 표현매체에 담긴 저작자의 독창적 저작물은 저작물로서 보호한다는 것이다(§102)<sup>9)</sup>. ■b)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I): 공정사용법리(fair use rule):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는 가지지만 공정사용<sup>10)</sup>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타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106). ■c)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II): 복제물이나 음반의 이전에 관한 효력(first-sale rule): 적법하게 제작된 복제물(서적, 음반, 비디오 등)이 일단 적법하게 시장거래(판매)에 의해 제공된 경우에는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당해 복제물의 차후 유통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한다. ■d)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III):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의 소유자가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불가피하게 만들어지거나 혹은 단지 기록보존을 위해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다른 복제물이나 각색물을 복제하거나 제작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e) 저작권의 존속기간: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된 날로부터 존속하며,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f) 전자절도금지: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실사 어떤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형사범으로 처벌토록 한다(§506)<sup>11)</sup> 등이다.

8) 이 정의는 한국의 저작권법(법률제6134호)에 기초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정의하고 있다(Copyright Law of 1998, title 17 of USC).

9) 보호되는 저작물의 유형은 다음의 8가지이다. 즉 ① 문헌저작물 ② 음악저작물(음악에 수반된 가사포함) ③ 연극저작물(연극에 수반된 음악포함) ④ 무언극 또는 무용저작물 ⑤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 ⑥ 영화 및 기타시각적 저작물 ⑦ 녹음물 및 ⑧ 건축저작물이다. 저작권의 객체에는 편집물과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s)을 포함한다. 저작물은 유형의 고정된 표현매체가 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으며, 재생할 수 있으며 혹은 기계나 기구의 도움을 받아 직접적으로 상호전달할 수 있다. 그 형태유무를 불문하고 어떠한 관념(idea), 개념 및 원칙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10) 저작자의 권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11) 종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해 상업적인 이익을 얻었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해왔으나 이규정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새로운 차원에서 강화한 것이다. 시중 판매가격 1천~2천5백달러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복사본을 한개라도 만들 경우 벌금 10만달러와 징역 1

그런데 이러한 저작권정책의 주요내용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즉 정보의 재생산, 분배, 통제 및 인쇄와 관련한 능력 등에 있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변화의 주요인자는 i) 디지털형태의 정보 ii) 컴퓨터 네트워크 그리고 iii) WWW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Evans & Wurster, 2000; 윤기호, 우지숙, 김병준, 1999.12). 첫째, 정보의 희귀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희귀하지 않는 정보의 가치를 주장해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정보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보의 생산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지의 판단이 어렵게 되었다. 둘째, 분배를 제한함으로써 정보의 가치를 소유자에게 부과하려던 저작권제도의 적용이 어려워졌다. 이제는 정보물의 판매를 대신하여 그 정보물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받으려는 시도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 점점 정보가 그 정보를 담고 있는 형태로부터 독립됨에 따라 정보생산자와 판매자들은 정보의 단위를 세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내야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을 만들었다. 1998년 10월28일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이 법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물이용과 관련한 제반 해결책이 담겨져 있으며, 명실공히 디지털시대의 대표적인 법으로서 우리나라 저작권관련 입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모두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기술조치우회금지(anticircumvention provisions):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하지 않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행하는 기술조치(technological measure)의 무력화를 금지하고 있다(§1201). 기술조치에는 허락받지 않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방지'하기 위한 것<sup>12)</sup>과 '복제방지'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무력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b) 저작권관리정보의 동일성유지: 저작권관리정보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정보로서 유지되어야 한다(§1202). ■c)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 책임제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4가지 경우는 그 책임이 제한된다. 즉 i) 일시적 디지털네트워크 통신 ii) 시스템 캐싱(system caching) iii) 사용자에 의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올려진 정보 iv) 정보소재확인도구(information location tools)에 관련될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된다. ■d) 비영리교육기관의 저작권침해 책임제한: 서비스제공자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조직일 때 그리고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교수와 연구원일 경우 저작권침해에 따른 책임에 한계를 가진다. ■e) 허위사실공표자의 책임: 어떤 내용물이나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이로 인해 부당하게 그 내용물이 제거되거나 작동불능이 되었을 경우 그러한 공표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해 입은 손실 및 변호사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f) 법원의 소환장요구: 저작권소유자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기되는 저작권침해자의 확인을 위해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의 소환장발부를 요구할 수 있다(§512(h)). ■g)컴퓨터 유지 및 수리를 위한 저작권 복제책임면제: 컴퓨터소유자나 임차인은 컴퓨터 수리나 유지만을 위해 컴퓨터를 작동시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년형, 2천5백달러이상 가는 소프트웨어는 벌금 25만달러와 징역 3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범에게는 6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1201조 (a)항은 접근통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물예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조치의 우회를 금지하고, 기술조치의 우회를 위한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구성품 또는 그의 부품을 제조, 수입, 공개제외, 또는 기타 불법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302(c))<sup>13)</sup>. ■h)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시적 녹음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에 의한 접근통제기술의 우회를 인정하고 있다(§402). 즉 송신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녹음을 면책한다. ■i) 비영리도서관과 기록보존소에 대한 면책: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보존관행에 맞추어 비영리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는 대여용 혹은 보관용으로 저작물을 1부 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도서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디지털복제를 포함하여 3부까지 복제를 허용하며, 원본형식이 구식일 경우<sup>14)</sup> 새로운 형식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404). ■j) 녹음물의 웹캐스팅 송신허용: 녹음물의 디지털실연권에 관한 법(DPRA)에 허용된 디지털송신의 범주에 새로이 웹캐스팅(Webcasting)을 추가하였다(§405). 이제는 녹음물의 웹캐스팅 송신을 허용하며, 일시적 녹음도 가능하다. ■k) 선박디자인보호: 독창적 선박디자인을 소유한 디자이너 혹은 그 소유자는 저작자로서 보호된다(§1301)는 것 등이다.

결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사용자들이 디지털형태의 정보를 쉽고, 저렴하게 그리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Rifkin, 2000), 이로 인해 기존 저작권정책의 한계를 노정시키게 되었다.

### Ⅲ. 연구방법론

#### 1. 분석시각,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정책 중에서도 저작권정책에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우리나라 저작권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우리나라 저작권정책이 디지털시대라는 환경변화를 적절히 잘 수용하며,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권익이 적절히 보호되는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분석의 관점은 제도적 시각(institutional perspective)이다. 제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이유는 저작권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작권법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저작권법(법률 제6134호)이며, 분석단위는 제도이다. 분석방법은 미국 저작권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분석변수를 구성하고 측정지표를 설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저작권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 저작권을 벤치마킹하려는 것은 다음의 5가지 이유이다. 첫째, 소위 '디지털시대'를 반영하여 저작권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정책으로 표현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점이다. OECD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손질을 가한 나라는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이미 디지털시대 저작권법(DMCA)을 1998년도에 마련한 바 있다. 둘째, 미국의 저작권정책을 벤치마킹한 또 다른 이유는 디지털시대와 같은 최근의 환경변화 및 새로이 대두되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현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저작권법을 위시한 환경법 등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및 한계 등을 고려한 해결방안들이 망라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미 미국저작권법이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현재의 저작권법

13) 이 규정에 해당되는 조건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즉 첫째, 컴퓨터수리나 유지를 위해 복제하였고, 끝난 뒤에는 즉시 지웠을 경우 둘째, 복제를 하지 않고서는 수리나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이다.

14) 이것은 저작물을 읽는데 사용했던 기계장치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시장에서 구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은 한미통상협상의 결과로 1986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다음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법인 것이다<sup>15)</sup>. 넷째, 각 국의 저작권보호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협약을 통해 전 세계의 법제도가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저작권보호의 보편적 특성은 WTO의 회원국이며, Berne조약의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저작권정책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DMCA도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규약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다. 다섯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보호실태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software piracy)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1년 5월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56%이며, 미국은 24%에 머물러 있다(BSA, 2001)<sup>16)</sup>. 이러한 현실은 한국이 미국보다 저작권보호가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처럼 강력한 저작권법을 벤치마킹하는 것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 2. 분석변수 및 측정

미국의 저작권관련 대표적 정책으로는 i)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the USA, 1999.4) ii)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Act, 1995. 11) iii) 전자절도금지법(No Electronic Theft Act, 1997.12) iv)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등 20여개<sup>17)</sup>가 있다. 그런데 디지털시대를 반영한 저작권정책

15) 이는 한국 저작권법의 생성배경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대한제국 융희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08년 8월16일 칙령으로 저작권에 관한 일본법이 계수의용(繼受依用)되었고,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본의 저작권법이 우리나라에 시행되었다. 그후 1945년 8월15일 이후에는 미군정청령에 의해 일본법이 그대로 유지해오다가 1957년에 새로운 저작권법이 생성되었고, 현재의 저작권법은 한미 통상협상의 결과로 1986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다음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따라서 현재의 저작권법의 주요 기초는 미국의 입김이 개입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의 생성은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1709년 영국, 1684년 독일에서 저작권법이 만들어 졌으며, 미국은 그 뒤 1790년에 생겨났다. 미국의 저작권은 저작행위를 한 사람에게 배타적 권리를 주는 법적 체계가 성립된 영국의 앤여왕법(Statute of Anne)의 영향을 받았다. 이 법은 저작자와 출판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복제권을 가진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었는데, 1790년에 입법된 미국 저작권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저작권법의 주요논리는 과학과 예술 또는 문화의 발전을 위해 저작자들에게 독점권과 경제적 보상을 주는 것인데, 점차 저작자들의 보호보다는 저작물사용자의 보호에 초점을 두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환경의 변화로 인해 저작자와 사용자간의 균형적 권익보호가 중요하게 되었으며, 미국의 DMCA도 같은 맥락에서 제정되었다.

16)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1995년(76%)이후 1999년(50%)까지 감소하다가 2000년(56%)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3,938억원(\$302,938,000, 2000년 기준)으로 추산된다(BSA, 2001).

17) 예를들어 ㉠ Berne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of 1988 ㉡ Satellite Home Act of 1988 ㉢ Copyright Fees and Technical Amendments Act of 1989 ㉣ Copyright Royalty Tribunal Reform and Miscellaneous Pay Act of 1989 ㉤ Copyright Remedy Clarification Act of 1990 ㉥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 Architectural Copyright Protection Act of 1990 ㉧ Computer Software Rental Amendments Act of 1990 ㉨ Copyright Amendments Act of 1992 ㉩ Copyright Renewal Act of 1992 ㉪ 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 ㉫ Copyright Royalty Tribunal Reform Act of 1993 ㉬ Satellite Home Viewer Act of 1994 ㉭ 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Act of 1995 ㉮ Anticounterfeiting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96 ㉯ Legislative Branch Appropriations Act of 1997 ㉰ Technical corrections to the Satellite Home Viewer Act of 1997 ㉱ Uruguay Round of Agreements Act of 1994 ㉲ No Electronic Theft Act of 1997 ㉳ Copyright Term Extension

은 DMCA에 거의 다 제시되어 있으며, 그 외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 전자절도금지법 등의 주요 내용은 모두 저작권법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인 저작권법과 DMCA의 내용을 기초로 분석변수를 구성코자 한다.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USA of 1999, Title 17)에 기초하여 디지털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저작권의 객체, 공정사용, 최초판매규칙, 컴퓨터프로그램복제, 저작권의 존속기간 및 전자절도금지 등이다<sup>18)</sup>. 그리고 전술한 DMCA의 내용을 기초로 분석변수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즉 기술조치 우회금지, 저작권관리정보 동일성유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허위사실공표자 책임, 비영리교육기관의 책임제한, 소환장 발부요구, 컴퓨터수리 및 유지책임면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비영리도서관의 면책, 웹캐스팅 송신허용, 선박디자인보호 등이다<sup>19)</sup>.

결국 본 연구는 디지털시대 저작권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저작권법에서 7개, DMCA에서 10개 등 모두 17개의 분석변수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변수는 정보생산자측면, 정보분배자측면 및 정보사용자측면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었고(분류II), 이를 다시 저작권자보호와 이용자보호(분류I)로 나누었다<sup>20)</sup>(〈표2참조〉).

〈표 2〉 분석변수의 분류

분류I	분류II	분석 변수	근거
저작권자 보호	정보생산자 (저작권자)보호	저작권의 객체(a1)	Title 17
		전자절도금지(b1)	Title 17
		기술조치우회금지(c1)	DMCA
		저작권관리정보 진실성(d1)	DMCA
		선박디자인보호(e1)	DMCA
		소환장발부요구(f1)	DMCA
		저작권의 존속기간(g1)	Title 17
사용자 보호	정보분배자 (서비스제공자 방송사업자) 보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h1)	DMCA
		비영리교육기관(i1)	DMCA
		비영리도서관 면책(j1)	DMCA
		허위사실공표자(k1)	DMCA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l1)	DMCA
	정보사용자 보호	웹캐스팅 송신허용(m1)	DMCA
		공정사용법리(n1)	Title 17
		최초판매규칙(o1)	Title 17
		컴퓨터프로그램복제(p1)	Title 17
		컴퓨터수리 및 유지 책임면제(q1)	DMCA

우선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는 아래의 7개 항목을 통해 측정한다. ■ a) 제도적

Act of 1998 ⊕ DMCA of 1998 등이다.

18)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에 기술되어 있다.

19)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에 기술되어 있다.

20) 17개 분석변수를 정보생산자측면, 정보분배자측면 및 정보사용자측면의 3측면으로 분류하였고(분류II), 다시 저작권자와 사용자보호(분류I)로 나누었는데, 그 이유는 저작권정책의 근본목적이 저작권자(정보생산자)와 저작권사용자(정보소비자)사이의 권익보호에 있기 때문이다.



으로 다양한 저작물이 보호되는가? ■b) 전자절도금지법 제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c) 기술조치우회금지가 제도로 마련되어 있는가? ■d) 저작권관리정보의 진실성유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있는가? ■e) 독창적인 디자인의 보호가 제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f) 저작권소유권자는 저작권침해자의 확인을 위해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소환장발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는가? ■g)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적절한가?

정보사용자의 보호는 정보분배자와 정보사용자의 두 차원으로 나누었으며,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i)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시스템 캐싱, 일시적 디지털네트워크통신, 사용자에 의해 올려진 정보, 정보소재확인도구 이용에 의한 사이트연결 등에 대해 저작권침해 제한 규정이 있는가? ■j) 서비스제공자가 비영리교육기관일 경우 저작권침해책임이 면제되는 제도적 근거가 있는가? ■k)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물이나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의 책임을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가? ■l) 공중을 위해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일시적 녹음을 제도로 허용하고 있는가? ■m) 비영리도서관과 기록보존소에 대한 면책을 제도로 허용하고 있는가? ■n) 인터넷방송에 의한 정보송신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근거는 있는가? ■o) 사용자의 공정사용의 범위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있는가? ■p) 최초판매규칙이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가? ■q)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제작함에 따른 면책규정이 있는가? ■r) 컴퓨터수리 및 유지를 위한 저작권 복제책임 면제규정이 있는가? 등이다.

## IV. 한국 저작권정책의 제도적 측면분석

### 1. 디지털시대 정보생산자의 권리는 보호되는가?

디지털시대 정보생산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분석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저작권의 객체

저작물의 적절한 보호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의 가장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전술한 바와 같이 8개 범주로 나눌 수 있지만 디지털시대에 예상되는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을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가령 디자인의 경우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의장법(법을 제6024호)에서 디자인을 특허의 일종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은 아무리 훌륭하고 창의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 2) 저작권관리정보의 진실성

저작권에 관한 관리정보는 진실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것을 통해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즉 i) 저작권공시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여, 저작물을 확인시켜주는 제목과 기타정보 ii) 저작물저자의 성명 및 기타 저자에 대한 신상정보 iii) 저작물의 사용기간 및 조건 등의 저작권관리정보는 고의로 삭제 변경해서는 안되며, 잘못 제공배포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보의 진실성유지는 저작물관리의 기본이며, 디지털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 특히 디지털시대는 정보전달이 초고속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면 바로잡기도 어렵거니와 그 영향이 심대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저작권법(제13조)에서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써 “동일성 유지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관리정보 진실성유지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 3) 선박디자인보호

미국은 DMCA에서 독립적인 장(chapter)을 만들어 선박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sup>21)</sup>. 이것은 디지털시대에 대비하여 미국은 독창적인 “디자인”의 저작권을 인정하려는 전초로 볼 수 있다. 일단 선박디자인(Vessel Hull Design)에 한정했지만 앞으로 그 범위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외모상 구매 및 사용에 있어 매력적이거나 특유할 경우, 그 물품의 디자이너 혹은 디자인 소유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 1301(1)). 중요한 것은 선박디자인 그 자체보다는 독창적인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어(저작권법 제4조) 선박디자인도 이것의 범주내에서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소극적 입장이며, 디지털시대를 반영한 적극적 의지가 미약한 실정이다.

### 4) 저작권의 존속기간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sup>22)</sup>.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하며,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3)</sup>. 반면 미국은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이 아니라 70년간 존속시키고 있다(17 U.S.C. § 302(b), 1998). 저작물보호기간이 한국과 미국은 20년정도 차이가 있는데, 20년 차이가 저작자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시대상황에 맞게 적절한 손질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종래 50년에서 DMCA를 만들면서 20년을 더 추가하였다. 그 외에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되는 i) 전자절도 금지 ii) 기술조치우회금지<sup>24)</sup> iii) 소환장발부요구의 세 요소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아직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시대 저작권자의 이익

21) 엄격한 의미에서 저작권의 객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따로 분석변수로 설정하였다.

22)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23) 다만, 이 기간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작자 사망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개정 95.12. 6).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38조).

24) 다만 다음의 6가지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즉 i) 리버스 엔지니어링<sup>1)</sup>(§1201(d) ii) 암호연구 (§1201(d) iii) 범집행, 정보수집 및 기타정부활동 (§1201(e)) iv) 미성년자와 관련한 예외 (§1201(h)) v) 사생활보호 (§1201(i)) vi) 보안검사 (§1201(j)) 등이다. 만약 기술조치우회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초벌의 경우 50만\$이하 혹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모두 부과할 수 있으며, 재범일 경우 100만\$의 벌금 혹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모두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전자절도금지과 기술조치우회금지 요소는 디지털시대 저작권보호의 주요한 변수중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Samuelson, 1999),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허점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복제와 전달이 쉽고 동시에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의 우회가 가능하다고 볼 때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소환장발부요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저작권정책의 한계가 있다.

끝으로 저작권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sup>25)</sup>이다. 디지털시대는 컴퓨터를 이용한 저작물의 복제가운데 상당부분은 사적이용을 위한 비영리복제에 속하는 것이다(김행남김홍수정상기, 1997; 안효질, 1997). 저작권도 엄연한 재산권인 만큼 단지 사적 이용(personal use)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댓가도 없이 타인의 저작물은 마음대로 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이용'에 해당되는가? 하는 논란이 있다<sup>26)</sup>.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이며,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웹 상에서 검색하거나, 결과적으로 복사되는 것은 법적으로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정보인프라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정보사용자의 사적·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웹 상에서의 복사가 소위 말하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2. 디지털시대 정보분배자의 권리가 보장되는가?

디지털시대 정보분배자<sup>27)</sup>의 권리가 보호되는지는 6개 분석변수를 기초로 살펴본다.

### 1)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미국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사업자)는 일시적 디지털네트워크 통신, 시스템캐싱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스템캐싱(system caching) 등을 할 수 밖에 없는데, DMCA에서는 이런 행위를 면책한 것이다 (§512). 침해책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i) 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의 요청에 의해 단순히 디지털정보를 네트워크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송신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경우(소위 일시적 디지털네트워크 통신) ii) 서비스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거나 통제되는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에 내용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함에 따르는 시스템캐싱 iii) 사용자에 의해 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에 올려진 침해적 자료 iv) 하이퍼링크(hypertext link), 검색엔진 등과 같은 정보소재도구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내용물을 담고 있는 사이트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 책임제한을 위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분배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

25)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제27조).

26) 이와관련하여 많은 국가들이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1992년 일반가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이며 비영리적인 이용을 위한 음반의 복제는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저작권자 등은 녹음기나 그 공테이프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법정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7. U.S.C. §1010).

27) 정보분배자라 함은 정보서비스사업자, 방송사업자, 도서관 및 비영리기관을 포괄한다. 넓게보면 정보사용자에 속하겠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였다.

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 2) 비영리교육기관

미국은 서비스제공자가 공공기관, 비영리교육기관 그리고 교수대학원생인 경우 저작권책임 제한을 두고 있다. 즉 i) 교수나 대학원생이 이전 3년동안 저작권침해에 연류된 적이 없거나 ii) 교수나 대학원생이 소속한 기관이 이전 3년동안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통지를 2번이상 받지 않았으며 동시에 iii) 그 기관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저작권관련법을 알려주고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정보를 제시했을 경우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적 이용'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는 있지만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공공기관이 공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르는 저작권침해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비영리도서관 면책 및 허위사실공표자

미국의 비영리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는 디지털 기술발달과 새로운 보존관행을 위해 저작물 1부의 복제를 허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3부까지 복제를 허용하는 등 복제에 따른 저작권침해의 책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도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즉 i)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도서 등의 일부분을 1인1부 제공이 가능하며 ii)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iii) 절판 혹은 보존용으로 사용할 경우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2000.1.12)에서는 도서관 등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등에서 사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비영리도서관 등에 대한 면책에 관한 한은 우리나라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정보분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사용자가 서비스제공자(사업자)의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자는 이로 인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여겨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정보분배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

## 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및 웹캐스팅 송신허용

방송사업자의 송신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녹음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면책사유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방송사업자는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및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 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저작권법제69조). 한국의 경우 방송내용을 녹음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송신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녹음'을 허용하는 미국의 경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다. 따라서 방송에 관한 한 한국이 미국보다 적극적으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녹음물의 웹캐스팅(Webcasting)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다. 즉, 미국의 경우 녹음물의 웹캐스팅 송신을 허용하며, 일시적 녹음도 가능하지만(§405), 한국의 경우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들 요소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한국의 경우 정보분배자의 권리는 상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부분 보호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며,

권리보호의 유무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 3. 디지털시대 정보사용자의 권리가 보장되는가?

이해당사자인 정보사용자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활한지를 분석변수를 토대로 살펴본다.

#### 1) 공정사용법리

공정사용법리<sup>28)</sup>는 미국의 경우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정사용법리가 적용되는 범주와 그 실질적 내용이다. 범주만을 놓고 볼 때 한국은 13가지에 달한다(저작권법 제22조에서 제34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제22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제23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4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6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17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제28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29조), 점자에 의한 복제·배포(제30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1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2조), 번역등에 의한 이용(제33조), 출처의 명시(제34조) 등이며, 실제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가능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시대에는 공정사용법리가 어느 정도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sup>29)</sup>. 이제는 모두가 정보의 생산자, 분배자 및 사용자가 된 시대에 공정사용법리는 자칫 저작권정책 존재자체의 위협인자가 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과 비교해볼 때 아쉬운 점은 디지털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i)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책임면제 ii) 컴퓨터수리 및 유지 책임면제 iii) 원격교육 등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 2) 최초판매규칙(first-sale rule)

미국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우리나라도 이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 저작권법 제43조(저작물의 거래제공 및 음반의 대여허락)는 '적법하게 판매를 통해 양수한 유형물 그 자체의 양도 또는 대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저작자보다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디지털시대에는 판매보다는 허가제도를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허가제도의 유용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 예컨

28) 공정사용법리란 "저작권의 소유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독점권과 무관하게 저작권소유자의 동의 없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소유자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다. 이것은 저작권침해의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이다(Crews, 1993).

29) Rich(1996) 등은 어느 국가에서나 사회습관이나 일반상식으로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정보사용은 묵인해 주고 있으며, 저작권의 사회공익성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지식의 소유는 인정할 수 없으며, 지식공개법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사용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사용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다만 그 내용상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다. 미국의 경우 'fair use'란 말을 쓰면서 공정사용의 판단기준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i) 그 사용이 상업적인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ii)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iii)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significance) iv)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저작권법제107조). 그런데 미국의 경우 가장 중요하면서도 애매한 기준으로 지적되는 것은 네 번째인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기준이다.

대 과거에는 책을 구입하여 소유대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자책(e-Book)에 접근할 수 있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여 허가를 얻어야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맞퇴기 등을 통해 지식재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보사용자의 입장에서서는 최초판매규칙보다는 허가제도에 의해 더 많이 다양한 저작물에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보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공정사용법리도 한계를 가지며, 또한 미국과는 달리 i) 컴퓨터프로그램책임면제 ii) 컴퓨터 수리 및 유지책임면제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일반사용자의 보호에 허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책에 『이 책의 무단전제 또는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제97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sup>30)</sup>』라고 표시한 것은 부당하게 사용자들의 정보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내에서 정보사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 V. 결론: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인터넷의 사용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가상공간을 통해 무방비상태로 전송되고 있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인터넷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므로 저작권 나아가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규범의 확대 적용 및 새로운 규범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난 뒤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 1. 분석결과

우리나라 저작권정책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디지털시대라는 환경변화를 수용하는 저작권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저작권관리의 진실성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특히 전자절도금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뿐만아니라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 책임제한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저작물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인 정보생산자(저작자), 정보분배자 그리고 정보사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미흡하였다. 우선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해서 볼 때 i) 보호하는 저작물로서 디자인은 소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ii) '공정한 사용'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iii) 기술조치우회금지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보분배자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 책임제한에 대한 제도적 장치(허위사실공표자 처벌규정포함)가 없어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저작물 사용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특히 공정사용법리가 디지털시대라는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sup>31)</sup>. 끝으로 정보생산자와 사용자의 균형의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의 이익이 좀 더 보호되고 있었다. 이것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시대-인터넷시대의 특성을 감안한 정보생산자와 정보분배자들

30) 영문책에는 "All right reserved. No portion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by any process or technique,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publisher"로 표시되어 있다.

31) 공정사용법리의 경우 정보생산자인 저작자와 정보소비자인 사용자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저작자의 권리를 우선할 경우 정보사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정보사용자의 권리를 우선할 경우 저작자의 권리보호가 허술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것이다.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음에 기인한다. 결국 정보생산자와 정보분배자 그리고 정보사용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한 채 디지털시대라는 현실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더 많이 보호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 정책적 함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은 '미국'이 그들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된 것이라는 주장<sup>32)</sup>이 옳다고 하더라도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식재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연구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디지털시대에 맞는 저작권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의 흐름과 생산을 제어하는 저작권정책은 디지털시대에는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용이하게 복제와 전송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복제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전자절도금지, 기술조치우회금지 및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 책임제한과 같은 요소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정책은 과거와 같이 조직이나 단체보다는 개인의 행태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작권정책도 저작자나 출판업자 또는 특정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국한해서 적용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으며, 점점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시대로 나가고 있는 데 기인한다. 디지털환경에 맞는 저작권정책의 준비를 위해서는 i) 정책이 간단하고 명료해야 하며 ii) 디지털환경하에서 공정한 사용과 저작권법의 예외조항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iii)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창조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cf. 이상정, 1994; Vaidhyathan, 2001). 저작권정책은 기본적으로 창조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보의 디지털화가 용이하여 어떤 행위가 창조적인 것이며, 누가 저작자인가의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많은 것이다. 또한 iv) 전자절도, 해커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Halbert, 1999). 디지털시대에는 전자적인 자료·정보·지식의 절도가 용이하고, 그 만큼 더 절도가 빈번해 질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미국 전자절도 금지(NET)법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는 설혹 어떤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형사범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v) 지식자산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정책(Right Management Policy)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와 같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식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디지털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 및 조직의 중요한 관리전략이 되었기 때문이다(Shapiro & Varian, 1999). 그리고 허가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U.S. Copyright Office, 1998), 동시에 정부정보에의 접근가능성 제고(한국전산원 1999) 및 문서화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 출판의 개념이 변하고 있고, 전자출판이 이루어지고 판매보다는 허가에 의해 분배가 이루어 짐으로서 문서화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 관련부처의 기능 명확화가 필요하다.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재산권의 대상과 폭이 확대 일로에 있는 지금 행정부처는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

32) 원래 지식재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국가'라는 하나의 경제주체가 얼마만큼 자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WTO체제내의 TRIPs협정이 오늘날 전세계적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범으로 정해지게 되었는데, 이것도 그 시작은 선진국의 이익에 따라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련업무는 특허청, 문화관광부 및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9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이것을 담당할 통합 정책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DMCA에서는 저작권청의 기능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401(b))<sup>33)</sup>.

셋째, 디지털시대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인 정보생산자와 정보분배자 그리고 정보사용자간에는 이익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자를 보호하면서도 그 사용자의 편익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정보행위자별로 살펴볼 때 정보생산자에게는 과거와 같은 지위를 누리면서도 끝없는 저작 혹은 창작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분배자들에게는 저작물의 유통에 있어 통제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디지털정보를 분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사용자들은 저작권침해를 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활용하고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잠재적 저작권자가 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자가 지식재산을 창조할 인센티브가 줄어들 가능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i) 복사의 용이성·저렴성 ii) 인쇄)의 성격변화 iii) 재생산가능성과 변환용이성 iv) 권리침해구제장치 미비 등이다.

넷째, 저작권의 보호메카니즘의 구축이 필요하다. 저작권관리정보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등의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기술적 보호수단의 개발<sup>34)</sup>도 필요하며, 동시에 적절한 비즈니스 모형의 선택이 필요하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 가령 i) 정보상품을 공짜로 주고 대신 부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ii) 초기버전의 정보상품은 공짜로 주고 업그레이드할 때 상품을 파는 경우 iii) 정보상품의 전체를 공짜로 제공하고 나중에 돈을 지불하라고 도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iv) 박리다매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v) 정보상품의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로 나누어 제공하며, 전체를 획득하기는 어렵게 하는 경우 등이다.

끝으로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Barlow, 2000)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정보화시대의 지식재산권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그것과는 전혀 상이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가 읽는 신문, 우리가 보는 TV와 영화,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메일을 보낼 때 이용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우리가 차에서 듣는 음악 등 우리의 일상생활 대부분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sup>35)</sup>. 우리가 흔히 행하는 작업들 가령 i) 파일받기 ii) 파일내용보기 iii) 웹페이지 내용보기, 복사 및 인쇄 iv) 파일, 웹페이지 내용의 타인에의 전송 등은 저작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흔히 저작권은 이미 발명되거나 창조된 지식을 보호하고 통제하는데 초점을 두는 제도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작권은 지식을 보호하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된 모든 지식창조자(potential all creator)로 하여금 그러한 지식

33) 즉 i) 저작권과 관련한 국내외 이슈의 의회자문 ii) 연방정부, 사법부에 저작권관련정보의 제공 iii) 저작권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수행 iv) 기타 의회가 지정한 내용수행 등이다.

34) 가령 i) 침해에 대한 경고 또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장치 ii) 허락받지 않는 복제를 통제하는 장치 iii) 저작물에의 접근통제장치 iv) 복제 등 이용 및 변경확인장치 ⑤ 이미지의 디지털워터마킹(watermarking)등이다(이용정, 1998;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 그런데 기술적 장치는 아무리 훌륭한 것이 개발되더라도 그것이 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35) 예컨대 i) 웹상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며 ii) 전자메일로 받은 것은 웹상에 올려도 되며 iii) 웹상에 있는 모든 것은 공공의 것이며 iv) 전자도서관 원문복사서비스는 당연하며 v) 웹상에서 저작권에 대한 고지가 없으면 얼마든지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을 창조하도록 유도하고 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도모하는데 있다는 등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려는 일종의 '사유재산 성격'과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일종의 '공유재산 성격'이 혼재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시대 저작권정책은 '정보권정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으며(황희철, 1996), 모든 정보는 재산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결국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문제의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sup>36)</sup>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며(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충곤. (1999). 다가오는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정보과학회지』 17(10):27-35.
- 김행남·김홍수·정상기. (1997). 정보통신망 발달과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저작권』 40(97.가을호):4-22.
- 박문석. (1998).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바람직한 저작권 정책 방향. 『저작권』 44(98.12):57-62
- 배대현. (2000). 디지털기술의 활용에 따른 지식재산권보호. 특허청 『지식재산21』 58:57-76.
- 송근장이기수·김홍주·최병규. (1998). 바람직한 지적재산권정책. 『지적소유권법연구』 2:221-246
- 안효질. (1997).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독일 연방보통법원 'CB-infobank I' 판결을 중심으로. 『저작권』 40(97.12):39-54.
- 우지숙. (1998).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타당성과 저작권법 연구가 정보법학에 갖는 함의에 대한 고찰. 『정보법학』 2(98.12):67-92.
- 윤기호·우지숙·김병준. (1999.12).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경제적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99-18.
- 윤선희. (1998). Internet상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국회보』, 381:115-124.
- 이상정. (1994). 저작물에 있어서 창작성 판단과 보호대상. 『저작권』 28(94.12):53-64.
- . (1999). 컴퓨터 프로그램과 저작권. 『저널리뷰비평』 28(99.9):44-49.
- 정찬모. (1999). 디지털이슈에 대응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미국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 ISSUE』 11(4):128.
- 황희철. (1996). 정보통신망발전과 저작권. 『뉴미디어와 저작권』, 한국언론연구회편.
- 홍성걸. (1997). 사이버 스페이스와 지적재산권 정책: 지적재산권제도의 정책학적 접근. 『국민대 사회과학연구』 10:117-131.
- 홍성태. (1997).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한국전산원. 『정보화저널』 4.
- Barlow, John Perry. (2000). *A Framework for Patents and Copyrights in the Digital Age*. Available online at(<http://www.wired.com/wired/archive/2.03/economy.ideas.html>)
- BSA. (2001). *Piracy Study*. Sixth Annual BSA Global Software. Available online at(<http://www.bsa.org/resources/2001-05-21.55.pdf>).

36) 현재 고려할 수 있는 변수로는 i) 미국 등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저작권과 관련한 법·제도적 환경 ii) 관련정책(정보정책, 산업정책 등) iii) 관련당사자들의 인지구조 및 iv) 국제적인 추세 등이다. 특히 v) 지식정보화시대로 인해 야기되는 제반 여건의 변화 그리고 vi) 앞으로서 장기전망 등도 고려되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디지털시대 저작권정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Crews, Kenneth D. (1993). *Copyright, Fair Use, and the Challenge for Universities. Promoting the Progress of Higher Education*. The Univ. of Chicago Press.
- Evans, P. & Wurster, T.S. (2000). *Blown to Bits: How the New Economics of Information Transforms Strateg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Halbert, D.J.(1999).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Age: The Politics of Expanding Ownership Rights*. Quorum Books.
- Harris, L.E. (2000). *Digital Property: Currency 21st Century*. McGraw-Hill Ryerson Ltd.
-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1995)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Office of Copyright, USA.
- Kahin B. & Varian, H.R.(eds). (2000). *Internet Publishing and Beyond: The Economics of Digital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MIT Press.
- National Research Council.(1999). *A Question of Balance: Private Rights and the Public Interests in Scientific and Technical Databases*. National Academy Press.
- . (2000). *The Digital Dilemma: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Age*. National Academy Press.
- Parr, R.L. (2000).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Damages: A Litigation Support Handbook: 2000 Supplement*. John Wiley & Sons.
- Ploman, E.W. (1998). *Copyright: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Age*. John Wiley & Sons.
- Posch Jr. & Robert J. (1999). What is Fair Use? *Direct Marketing*. Vol.62(1). Hoke Communication, Inc.
- Rich, L.L.(1996). *How much of Someone's Else's Work May I Use Without Asking Permission: The Fair Use Doctrine*. available online at <<http://www.publaw.com/work.html>>.
- Rifkin, J. (2000). *The Age of Access: The New Culture of Hypercapitalism Where All of Life is a Paid-For Experience*. Jeremy P. Tarcher/Putnam.
- Samuelson, P. (1999). "Why the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Need Revision",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Age of Universal Access*.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 Shapiro. C. & Varian. H.R. (1999). *Information Rules: A Strategic Guide to the Network Econom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 Smith G.V. & Parr R.L. (2000).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angible Assets*, 3rd Edition. John Wiley & Sons.
- Sullivan, P.H. (2000). *Value Driven Intellectual Capital: How to Convert Intangible Corporate Assets into Market Value*. John Wiley & Sons.
- U.S. Copyright Office. (1998). *Project Looking Forward: Sketching the Future of Copyright in a Networked World*. Written by Trobter Hardy.
- United States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1995). *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Washington, D.C.: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Vaidhyathan, Siva. (2001). *Copyrights and Copywrongs: The Ris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How It Threatens Creativity*. New York University Press.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96).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Massachusetts: Kluwer Law International.

Zorich, D.M. (1999). *Introduction to Managing Digital Assets: Options for Cultural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Getti Information Institute.

〈ACTS〉

- Anticounterfeiting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96
- Architectural Copyright Protection Act of 1990
- 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
- Berne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of 1988
- Computer Software Rental Amendments Act of 1990
- Copyright Amendments Act of 1992
- Copyright Fees and Technical Amendments Act of 1989
-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f 1998(title 17 of USC)
- Copyright Remedy Clarification Act of 1990
- Copyright Renewal Act of 1992
- Copyright Royalty Tribunal Reform Act of 1993
- Copyright Royalty Tribunal Reform and Miscellaneous Pay Act of 1989
-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8
-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
- 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Act of 1995
- Legislative Branch Appropriations Act of 1997
- No Electronic Theft Act of 1997
- Satellite Home Act of 1988
- Satellite Home Viewer Act of 1994
- Technical corrections to the Satellite Home Viewer Act of 1997
- Uruguay Round of Agreements Act of 1994
-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

**李基植:** 고려대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해대학교 지방자치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정보관리와 방법론이다. 주요논문으로는 '디지털시대 저작권정책의 재조명(2001)',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평가(2000)', 'TRA관점에서 본 한국공무원, 주부 및 대학생들의 재활용행태 분석(2000)',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 Recycling Behavior :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Officials and Housewives(1999)' 등이 있다(elee@royal.net).